

□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 □

제2회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이 자료집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전화 : 02-790-4774 팩스 : 02-793-3979
주소 : (140-21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6-1 수영빌딩 301호
웹사이트 : <http://www.kaskorea.org> E-mail : kas@kaskorea.org

함께하는 시민행동
Citizens' Action Network
전화 : 02-921-4709 팩스 : 02-6280-7473
주소 : (136-045)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
웹사이트 : <http://www.action.or.kr> E-mail : action@action.or.kr
후원 : 조총 325-01-167213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권정보자료실
G1.138.2

□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 □

제2회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일시 : 2005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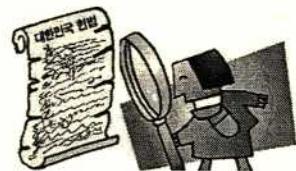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후원 : 콘라드-아테나워 재단 (<http://www.kaskorea.org>)

개요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

제2회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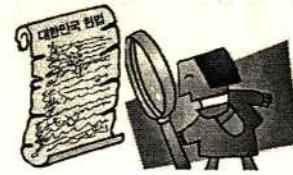
- 일시 : 2005년 8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action.or.kr>)
- 후원 :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http://www.kaskorea.org>)

사회 : 박성준 (비폭력평화물결 대표)

발표 : 1.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처장)
2.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 이경주(충북대 법대)

토론 : 1. 권길현영 (언니네트워크 편집장)

2.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3. 정태욱 (영남대 법대)



목 차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 이대훈	2
연행 헌법의 평화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 이경주	16
부록 1 : 주요 국가 헌법의 평화 관련 조항	35
아메리카합중국 헌법	35
독일연방기본법	37
일본국 헌법	44
스위스 헌법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49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52
부록 2 : <헌법 다시보기> 무엇을, 왜 아나요?	55
부록 3 :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의 주요 계획	60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I. 국가의 폭력과 헌법에서의 평화주의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태도, 군사 동맹 및 계엄이나 비상조치 등 대내외 군사활동을 주요 근거로 판별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헌법에서 좁은 의미의 평화주의, 즉 국가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평화주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확대된 의미로서의 평화, 즉 정의 구현과 관련된 헌법상의 평화주의 문제로서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 문제를 고찰한다. 이 글은 대내외적인 군사활동에 초점을 두는 평화주의 논의는 협소하며 평화주의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헌법에 수용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주의 헌법으로의 길, 평화주의 국가로서의 길이라고 제안한다. 냉전시대의 산물이 국가안전보장에 협소한 이해는 평화주의 헌법에 중대한 장애물이며,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각도에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국가의 정체성이 동맹이나 특정 국제체제 위치에 근거하지 않고 '인권과 평화'라는 초국적 외연을 가지는 고도의 민주주의 가치로 재규정되는 과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좁은 의미의 평화와 관련된 다음 조항을 두고 있다.

- (전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제5조 1-2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II. 평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

1970년대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국제인권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유엔 기구에서는 이른바 평화-인권-개발(발전)의 삼각주제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동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서방진영은 자유권적 인권을 핵심 의제로 삼는데 동의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제평화 문제를 그리고 이른바 남반부 개도국들은 개발(발전)이 핵심 의제라고 주장했다.

공동체가 임의로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가치를 권리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인권의 접근이기 때문에 평화-인권-개발(발전)이 삼각주제에 관한 논쟁은 자연스럽게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¹⁾ 와 평화권 right to peace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가 되는 정신으로서 "세계인권선언(1948)"은 전문(前文)에서는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28조는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바람직한 국제질서가 인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의 권리와 관련하여 1984년 유엔 총회는 서방을 제외한 국가들의 주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에 대한 인민들의 권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유엔총회 결의 39/11, 1984년 11월 12일 채택). 이 선언은 전쟁이 없는 삶이 모든 나라의 물질적 안녕과 발전, 진보, 권리와 자유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제적인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핵심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인민들의 평활로운 생활의 유지가 각국의 신성한 의무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염숙히 선언한다.

1) 발전권 선언은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대훈, "발전의 권리와 개발",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참조.

1. 지구상의 인민이 신성한 평화의 권리를 가지며,
2. 인민들의 평화의 권리와 그 이행은 각국의 근본적인 의무이다.

유엔 평화권 선언에서 평화권은 자결권과 마찬가지로 인민들이 집단적 권리로 제시되었으며, 개개인의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평화권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평화권 선언에는 심지어 전통적인 주제인 '국제관계 무력사용의 금지'라는 규정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냉전시대 체제 경쟁에 기인하는 한계로 보이며, 개개인의 기본권으로서 평화를 향한 인권에 대한 논의는 숙제로 남게 되었다.

평화와 인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에는 세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하나는 인권이 평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접근이며, 두 번째는 인권을 평화의 구성요건의 하나로 보는 것이며, 세 번째는 평화를 인권의 전제조건을 보는 것이다.²⁾

첫 번째 접근을 대표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유엔헌장 55조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가 국가간에 호혜 평화 관계에 필수적인 안정과 복리의 조건을 형성하는데 관건'이라고 명시적 규정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이 유럽안보협력기구과 헬싱키협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는 인권이 국경을 넘는 보편적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한 국가의 타국의 인권에 대해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국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봉하는 사회구성원인 다수인 사회에서 조차 왜곡된 정보나 정치조작 또는 역사적인 편견 또는 국익론이나 국가안보론에 설득당해 타국에 대한 부정의한 전쟁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인권보장을 평화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접근은 주로 요한 갈퉁의 구조적 폭력-적극적 평화의 접근에 의한 것으로 인권보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복리와 안전보장의 총체를 평화로 설정한다. 국제기구로서는 유네스코가 채택하고 있는 평화에 관한 입장이 이에 가까우며, 이러한 경우 인권보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평화는 인류가 지향하는 선한 가치의 총합으로서 주로 설정된다. 인간안보론은 개인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총체적 평화론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선한 가치의 총합으로의 개념 또는 접근이 정책 입안의 현실적 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인간안보의 접근에서와 같이 아직 의문이다.

인권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평화를 설정하는 접근은 우선 국제인도주의법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무력분쟁에 관한 국제법은 전쟁중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전쟁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에 전제가 되는 관습적인 이해에는 평화의 부재 즉 전쟁/무력갈등이 인권 향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자명한 이해가 깔려있다. 국제인도주의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권보호의 목적이 싸우는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전쟁 개시의 조건과 정당한 전쟁 수행의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싸우는 상대, 즉 적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인권법은 전쟁중에도,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나 개인이 침해할 수 없는 절대불가침의 영역을 설정한다. 비상 상황에 의해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일부 제약하는 경우에도 이 제약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조 2항은 생명권, 신체안전권(고문과 가혹행위의 금지), 노예제의 금지, 채무에 의한 억류, 형법정주의 등의 권리를 절대불가침의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비상상황이라도 국가와 개인이 침해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의 영역이 존재한다는데 국제사회가 합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합의할 수 있는 절대불가침의 '중대한 인권'의 영역이다. 이러한 접근도 약점이 있는바 최근 각국의 반테러법의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드러나듯이 무능한 정치지도자들과 사회적 히스테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며 아시아 시민사회에서 진행된 인권으로서의 평화를 정립하고자 했던 노력을 살펴보며 비교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 아시아 전역의 약 150개의 비정부기구들이 참여한 수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아시아 인권헌장 초안이 작성되었고,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협의를 거쳐 1998년 5월 아시아인권위원회의 초청으로 부탄, 홍콩, 인도, 캄보디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국 광주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을 선언하였다. 아시아 인권헌장에 담긴 평화권 조항을 좀 길지만 인용해 본다.

평화권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아시아 민중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커다란 곤란과 비극을 체험하고 있다. 전쟁과 내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훼손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지

2) Dimitrijevic, Vojin. "Human Rights and Peace", in Symonides, Janusz (ed), *Human Rights :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Ashgate/UNESCO, 1998

방 내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전쟁과 내전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삶 혹은 평화적 생활을 갈구하는 그 어떤 희망도 거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심하게 군사화되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의해 결정되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국가는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진다. 이 책무는 폭력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법률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3. 평화롭게 살 권리가 보장되려면,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들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에 기대지 않고 사회 속에 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4-4. 파시스트의 침략과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보전과 강대국의 내정 불간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당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외세의 강점 위협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외자 유치가 인권 탄압의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 안전을 국제 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책임을 질 때만 보증된다.

4-5.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전쟁과 내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국 국가들은 아시아의 각종 집단들을 대리자로 내세워 전쟁을 부추겨왔고, 이들 내전에 개입된 집단과 정부에게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이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대한 공공자금을 무기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 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평화권을 1항 평화적 생존권에 기초해 규정하면서도 평화

의 조건을 무력분쟁에 국한하지 않고 광의의 정의 구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의 대외 무력행사의 제한의 국한하지 않고 국가에 의한 폭력 일반을 제약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인권의 종체적인 보장이 평화의 구성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국제질서의 정의로운 개편이 일국적인 평화구현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 등이다. 즉 아시아인권헌장에서의 평화권은 일국과 국제질서를 관통하는 정의구현의 상을 권리로서 표현했다고 보인다.

III.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과 평화의 권리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를 대외적 평화, 즉 전쟁과 대외 군사활동 등으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협소하다. 평화주의의 핵심은 폭력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인데, 폭력과 공포가 주로 외부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현대사에 반복되었듯이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평화주의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무력/폭력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수용 범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국가의 무력/폭력 사용에 국한해서 평화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중대한 폭력에 대한 보편적 규범을 수립해온 국제적인 노력과 상치된다. 무력/폭력의 사용이 외부이던 내부이던, 그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의무과 권리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폭력 이전 이후에 어떻게 보장할 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전쟁 수행상의 부당한 폭력과 국가의 (국내적) 인권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공히 그 책임을 묻는 인권규범으로서 유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 협약 (1968)', 유엔 인권소위 '중대한 인권침해와 중대한 인도주의법 위반의 피해자 보상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특별보고관 Theo van Boven, 1995)' 등이 있으며,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규정한 인권규범으로서 유엔인권소위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 배상, 보상, 재활에 관한 연구 (특별보고관 Theo van Boven, 1993)', 유엔인권위 '불처벌 척결을 위한 보강 원칙 (독립적 전문가 Diane Orentlicher, 2005), 유엔인권소위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인권침해 가해자의 불처벌 문제에 관한 최종 보고서 (Louis Joinet, 1997)' 등이 있다. 이러한 인권규범에는 공통의 기반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경우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의 책임 추궁에 국경,

즉 내부/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엔 시효부적용협약은 먼저 “범행의 시점을 묻지 않고”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제1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쟁범죄는 다시 뉘른베르그 현장에서 정의되고 유엔 총회의 결의 3(1)호(1946.2.13)와 95(I)호(1946.12.11)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한정되고 특히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5년 8월 8일의 제네바협약들에 열거된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도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제1조 (a)). 이 협약에서 인도에 반한 범죄는 “전시 또는 평시에 저질러졌던 간에 1945년 8월 8일의 뉘른베르그 국제군사법정현장에서 정의되고 유엔 총회의 결의 3(1)호(1946.2.13)와 95(I)호(1946.12.11)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정의된다(제1조 (b)). 이 협약은 또한 “무력공격 또는 점령에 의한 축출(eviction), 인종격리(apartheid) 정책으로 야기된 비인간적 행위와 집단학살범죄”에도 적용된다(같은 조문). 이 협약의 규정은 범죄의 완성 정도를 묻지 않고 정범이나 종범으로서 이러한 범죄행위의 실행에 가담하거나 직접적으로 선동 또는 모의한 국가당국자와 사인과 이러한 범행을 용인한 국가당국자에게 적용된다(제2조). 유엔협약은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의 “소추와 처벌에 대해 공소시효 또는 다른 제한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의 폐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입법 또는 다른 조치를 각각의 헌법절차에 따라 채택”할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한다(제4조).³⁾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는 일반적으로나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제7조에 의하면 반인도적 범죄는 민간인에 대하여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으로써 자행된 다음 열거된 행위를 말한다.⁴⁾

- (a) 살인(murder); (b) 말살(extermination); (c) 노예화(enslavement); (d) 강제이주(deportation or forcible transfer of population); (e) 국제법의 기본적 원칙에 위반되는 구금이나 심각한 신체의 자유박탈(imprisonment or other severe deprivation of physical liberty in violation of fundament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f) 고문(torture); (g) 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혹은 기타 이와 비견되는 성적 폭력(rape, sexual slavery, enforced prostitution, forced pregnancy, enforced sterilization, or any form of sexual violence of comparable

3) 이상, 조시현,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시호문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4) 박찬운, “‘반인도적 범죄’의 국내적 수용—국내법의 문제와 수용방안을 중심으로”, 출처 미확인

gravity); (h)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혹은 성차별에 입각한 어느 특정 그룹에 대한 박해(persecution against any identifiable group or collectivity on political, racial, national, ethnic, cultural, religious, gender....); (i) 강제된 납치행위(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j) 아파르트헤이트; (k) 기타 의도적으로 신체에 심각한 고통을 주기 위해 자행되는 비인도적 행위(other inhumane acts of a similar character intentionally causing great suffering...to body....)

동 규정은 재판소의 관장범죄로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행위(aggression)와 함께 가장 중요한 관장범죄행위로서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는 국제규범으로서 가장 엄격하게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인권’의 영역, 즉 인류사회가 제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가장 극심한 폭력의 영역을 규정하는 노력의 한 분수령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의 범죄상의 등가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IV. 국가안보장에 대한 이해

국가안보는 근현대 국제체제를 떠받치는 국가주권 원리의 핵심적인 정책담론이다. 국가의 최고 목표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 정책 분야가 다른 정책 분야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안보는 또 국익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주장된다. 파병과 관련된 국익론, 유신시대 ‘안정위의 성장론’ 등이 모두 같은 종류이다. 국가안보를 인간 안보와 대치시켜 진정한 안보가 존재한다고, ‘정권안보로 전락한 국가안보’를 주장함으로서 진정한 국가안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결국 ‘안보’ 담론의 틀 안에서 전개되는 부분적인 비판이다. 평화운동을 세계 체제와 연관시켜 이해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근대 세계체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안보’라는 언어는 근대 세계사에서 서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퍼져나간 개념으로, 사회적 자발적 합의가 불가능한 “모호한 상징”이며 좋게 평가할 때 “저개발된 개념”에 불과하며, 최대한 현실에 적용해도 “안보의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국가안보정책은 그 명칭부터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1947년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는 전후 세계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이 외교정책의 중심에 안보 사상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배경은 냉전의 총체적 진영 대결 구도하에서 전통적인 일국적 국가방위(국방 national

defence)의 접근으로서는 대사회주의권 대결을 구사하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충분한 국내적 동의를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다.⁵⁾ 즉 해외에서의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보호가 곧 국익이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국가방위라는 소극적 정책 태도를 대신하는 공세적인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안보론이 당시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중추적인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냉전의 총체적 대결 구도가 요구하는 증대된 국방비, 사회안정에 대한 압력, 적극적이며 확대된 대외 정책, 핵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면에는 이러한 확대된 군사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의 거부반응을 극복할 필요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안보 패러다임은 보통 어떤 행위를 ‘적대 행위’로, 어떤 수준의 행위를 ‘위협’으로, 또 어떤 국가를 ‘적국’으로 규정하는 일상적인 해석과 인식의 영역을 포함한다. 보통 안보 위협이라고 지칭되는 현상에는 물리적 군사력이라는 실제와 그 군사력의 사용에 대한 정보와 추측, 해석과 편견, 정치적 의지와 여론이라는 ‘관념’ 실재가 함께 들어있다. 때문에 안보 문제는 물리적 실재만 다루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해석과 편견 및 추측이 난무하는 ‘관념’의 영역을 아울러 상대해야 한다. 관념과 결합되지 않은 물리적 군사력은 그 자체로는 안보위협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안보위협을 제기하는 ‘행위’는 특정한 정치적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자는 자기의 관념과 의지, 정체성을 재형성 또는 강화하기 때문에 ‘안보’ 언술은 정치적 행위자의 구성적 행위이다.

‘안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정치적 해석과 언술행동은 다른 정치적 언행과 다르게 ‘죽음의 공포’를 제기하는 특별한 행위이다. ‘안보’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국가의 죽음 및 국가구성원의 죽음에 이른다는 ‘협박’을 수반하는 언행이라는 면에서 다른 ‘국익’ 언술과 다르다. 그 목적은 통상적인 정치 수단 이외에 특별한, 예외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대중에게 호소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즉 안보의 언어로 자행되는 정치행위는 비정상성을 요구한다. ‘죽음의 공포’를 전제로 한 이 비정상성은 대응 수단으로 폭력(군사행동 또는 초법적 안보기구의 활동)을 정당화한다.

즉 안보 정치는 비정상적 정치의 정당성 획득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와 일상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폭력의 증대를 가져온다. 죽음의 공포라는 장막을 통해 안보 행위자와 안보 전문가들은 민주적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 이런 면에서 ‘안보의 언어’는 발화자의 안보를 지켜준다.

5) Waever, Ole. *Concepts of Security*.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openhagen, 1997.

냉전의 광기가 잦아들면서 극단적인 ‘공포의 언어’로서 안보론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냉전이후 안보론은 보다 낮은 수준의 공포를 다루는 ‘위협의 언어’로 변화하는데 이로부터 ‘안보개념의 확산’ 문제가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안보 사항으로 군사력, 세력균형, 신기술의 군사적 영향, 자원 경쟁, 영토 보호 등을 취급하며 신(비전통적) 안보사항으로 경제위기, 환경파괴, 인권, 정치안정, 국제범죄 등이 거론된다.

보통 폭력적 수단을 호소하지는 않지만, ‘경제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테러리즘’을 (때로는 마치 국가안보론에 대한 대안인 듯) 제기하는 것은 그 동기가 역시 해당 문제가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므로 특단의 조치를 요한다고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같은 종류의 ‘강조 어법’이다. 그러나 안보문제의 확대, 정확하게는 ‘안보언어’의 확대는 원하던 바와는 반대된 결과를 얻게 된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특정 이익, 특정 주제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공포감을 끌어들이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아무 주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통 인간안보를 주제로 하는 논의에서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인간 ‘안보’ 항목을 몇 가지 언급해보면; 폭력으로부터의 개인적인 안전, 생활필수품의 확보, 범죄와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 정치적 부패로부터의 안전, 인권보장, 젠더 차별의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적 문화적 공동체의 권리 보장, 경제개발, 민주주의 신장, 자연환경 남용 방지, 지속가능한 환경...등이 있었다. 외교정책에 인간안보 문제에 적극 수용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는 인간안보를 “폭력적 위협 및 비폭력적 위협으로부터의 인민의 안전”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슈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무의미한 결론에 도달한다. 낮은 수준의 위협을 강조하는 확대된 안보담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은, 최근 ‘테러리즘’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적 과잉안보와 전쟁도발을 정당화하는 부시 행정부의 노선에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고 보인다. 즉 안보의 정치에서는 죽음의 협박이 다른 모든 협박을 압도하는 협박의 제왕인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안보론이 대두될 수 있으나, 이러한 안보 인플레노선 보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다수의 다층적인 ‘위험도(risk)’를 인정하고 위기관리 정책 차원에서 정상적인 정치적 접근을 함으로서, 안보담론이 근거하고 있는 ‘공포의 장막’을 걷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를 우리는 (이른바 안보전문성이 보통 군사전문성, 국제정치 전문성과 상통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총체적으로 ‘안보문제의 사회화’ 또는 ‘안보문제의 탈안보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냉전 담론에 대한 대항으로서 ‘죽음’의 정치로부터 ‘상생의 정치’로의 전환으로도 담론화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방면에서 평화운동이 물리적 군사력의 문제와, 안보위협의 해석과 선동의 문제, '적'과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탈안보적 행위자 형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전쟁이나 갈등을 겪은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위협'의 판타지가 깊게 각인되어 그 인식이 강고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위협의 정치를 통해 기반을 다진 정체세력들 역시 강고하기 때문에, 즉 이른바 안보 체제가 강고하기 때문에 안보의 사회화/탈안보화 과정은 오랜 과정을 거쳐야 형성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V. 소결

이상에서 우리는 국제 시민사회와 공동노력과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의 발전 과정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폭력에 대한 위대한 거부'를 발견하게 된다. 즉 국가를 포함하여 어떠한 행위자도 대량학살(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행위(aggression)와 함께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서 공소시효배제나 사면 또는 망각을 통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규범으로서 가장 엄격하게 가해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대한 인권'의 영역, 즉 인류사회가 제거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가장 극심한 폭력의 영역을 규정하는 노력의 한 분수령이다. 평화주의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폭력의 여러 모습 즉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의 범죄상의 등가적 위치이다. 이는 평화를 외부에서의 무력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다.

헌법상의 평화주의를 인권으로서 접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폭력을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 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국가가 전통적으로 부여했던 의무를 벗어던지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군사력을 포함해서 폭력의 행사에는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국가가 그러한 폭력행위를 수행했다고 해서 면책될 수 없으며,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 규정된 인권침해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주목하여 즉 인권침해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정의구현의 출발점으로 하는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국가의 인권 피해자 구제 의무는 근대 인권의 핵심이다.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적 접근의 효과는 나아가 피해를 직접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전체가 자신의 속한 국가가 어떠한 반인권적 행위를 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과 인적 청산 등으로 통하여 개혁됨으로서 온전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과정을 보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추후,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대량학살, 전쟁범죄,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해서 국적을 막론하고 피해자의 구제권을 보장하는데 충분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자유로운 동의에 기초한 것인지 인지된 공익성에 기초한 것인지 그러한 기초를 요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의무가 보편적인 최소한의 보편적 인권규범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책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경우 의무는 동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평화의 권리와 관련된 전쟁행위, 군사활동, 기타 국가의 불법적 폭력행위 (쿠데타시의 병력동원 명령에 대한 복종 등)와 반인도적 범죄 (고문, 납치 등) 등이다. 이러한 영역은 통상 국가안보 활동으로 인식되는 영역과 반인도적 범죄의 영역이다. 반인도적 범죄와 달리 국가안보 영역의 활동은 국가 행위중에서 보편적 인권규범과 충돌할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당화되어온 영역으로 문제가 더 크다. 이러한 면에서 이 영역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국제형사재판의 관장범죄와 관련된 논란이 이는 영역에서는 자동적인 준수(compliance)를 적용할 수 없으며, 국가 정책의 영향과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인지한 연후의 동의(consent by knowing)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안전 문제에 대한 해석의 복수성을 열어 놓을 필요가 대두된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지킬 필요이다. 정책의 정당성이 의심받을 경우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안간의 경쟁을 추구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가안보 문제의 경우 이는 적, 위협, 안보이슈, 관련된 군사·외교 활동의 성격과 범위에 대하여 해석과 판단의 복수성을 열어 놓는다는 의미이다.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복수성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관건이다. 월남전 파병과 이라크파병의 경우, 왜곡된 정보와 알권리의 침해를 통해서 즉 일종의 여론조작을 통해, 국방과 관련이 없는 불법전쟁에 시민들의 인지된 동의 없이 생명을 건 의무를 병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한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정당성이 논란이 되는 군사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해석

과 판단의 복수성을 충분히 열어놓지 않은 데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추후 전쟁범죄 또는 그에 공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91조에 같이 국가안전보장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평화주의 헌법이라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과 인지한 연후의 동의권을 전제로 하는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다수의 인권체계와 우리 헌법에서 평화는 주로 '국가간의 전쟁이나 국가 내에서의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평화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조건 혹은 질서로서 막연히 이해되고 있을 뿐 독자적 권리로서 승인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국제기구에서 '평화권'이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일정한 합의를 구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보편적 승인과 적용의 지위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 결과 인권체계 내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다양한 폭력의 가능성으로 향시적으로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탈냉전 이후 오히려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전쟁이나 무력분쟁들이 인민들을 인권에 대한 총체적 부정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과 1999년의 코소보 전쟁을 계기로 하여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전쟁'이 감행됨으로써 인권과 평화의 충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의 전쟁 등을 고려할 때, 전쟁/무력사용은 '더 이상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정치의 종말'인 만큼, 전쟁/무력사용/국가의 중대한 폭력에 대하여 인권론 차원의 명확한 입장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인권과 평화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평화에 대한 권리의 독자적 개념화와 인권체계와 법리체계로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12월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이대훈, "발전의 권리와 개발",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회, 1998

Kritz, Neil J. (ed), *Transitional Justice: How Emerging Democracies Reckon with Former Regimes*, Vol. I,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1995

Levi, Margaret, *Consent, Dissent, and Patriot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Rosenau, James N., "Citizenship in a changing global order", in Rosenau, J.N. and Czempiel E. (eds)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Symonides, Janusz (ed), *Human Rights: New Dimensions and Challenges*, Ashgate/UNESCO, 1998

Waever, Ole, *Concepts of Security*,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Copenhagen, 1997

현행헌법의 평화주의, 그 가능성과 한계

이경주 (인하대 법대)

I. 들어가는 말

한국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이론의 여지없이 언급되던 평화주의를 한국사회는 그간 잊고 지내었다. 설령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 manifesto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라크파병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평화주의와 관련된 전례없는 헌법실천 요구들에 접하게 되었다. 그것은 평화주의가 하나의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의미를 갖는 것이며 평화주의 원리에 충실히 이라크 파병 입법을 중단하고 파병이라는 정부의 행위를 중단할 것, 파병행위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는 헌법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헌법의 기본원리란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것이면서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원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헌법의 전문과 본문중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에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가 갖는 규범적 의미는 (ㄱ)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기준이 된다는 것, (ㄴ)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ㄷ)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 된다는 것, (ㄹ) 헌법개정에 있어서 개정금지대상이 된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헌법원리의 규범적 의미를 이렇게 풀이한다면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일어나고 있는 평화주의원리에 대한 실천적 요구들에 대한 헌법론적 재고찰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하 II에서는 세계 각국의 평화주의의 규범화 경향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III.에서는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의 관련 규범의 의미내용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헌법상의 평화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보고자 한다. IV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의 재발견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없는 것인지 그 한계와 극복방향성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는 것으로 한다.

II. 세계각국의 평화주의 조항의 유형과 동향

1.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한형

(1) 프랑스

1791년 제1공화국 헌법 제6편

프랑스국민은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을 포기하고 인민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1848년 제2공화국헌법 전문

프랑스공화국은 자국민을 존중하듯 외국민을 존중한다. 또한 정복 목적의 전쟁을 기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인민의 자유에 대해서도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945년 제헌의회 제출 급진사회당 인권선언 초안 중
생존의 권리(Droit de la vie)는 인권 중의 제1인권이다.
생존의 권리란 전쟁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946년 제4공화국 헌법 전문

프랑스공화국은 국제공법의 원칙을 따른다. 공화국은 정복 목적의 모든 전쟁을 기도하지 않으며 어떠한 인민적 자유에 대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는다. 상호성의 유보 하에 프랑스는 평화의 조직과 방위의 조직을 위한 주권계약에 동의한다.

(2)이탈리아 헌법

이탈리아는 타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여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전쟁을 부인하고 타국과 상호 대등한 조건하에 평화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질서에 필요한 주권제한에 동의하고 이러한 목적의 국제조직을 추진하고 조장한다.(1947년 12월 공포 1948년 1월 발표)

(3)독일

1949년 5월 23일 헌법

24조(주권이양, 집단적 안전보장)

1항 연방은 법률에 의하여 그 주권적 권리(Hoheitsrechte)를 국제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2항 연방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방은 평화롭고 또 영속적인 질서를 유럽 및 세계제국가간에 가져 오고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주권작용의 제한에 동의한다.

3항 국제분쟁을 규제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포괄적 의무적 국제적 중재재판 협정에 참가한다.

26조(침략전쟁의 금지)

1항 국가간의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교란할 우려가 있고 또한 그 의도로써 행하여 지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의 수행을 준비하는 행위는 위험으로 한다. 그와 같은 행위는 처벌한다.

2항 침략수행을 위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 운반 또는 거래할 수 있다. 그 세목은 법률로써 정한다.

1950년 개헌 움직임

1952년 미영불 서독 평화조약 및 유럽방위공동체조약

1954년 10월 점령 종결, NATO가입승인
파리협정조인(최대 50만 병력, 전략병기제조에 관한 서유럽연맹의 허가 등)
유럽군이 아니라 서독의 개별적 군대의 나토체제 가입 형태로 재군비

1956년 3월19일 제7회 개정

17조a 군인군속 일반시민의 기본권 제한

45조a 연방의회 외무 방위위원회 설립(문민통제)

45조b 방위수탁관

65조a 연방국방대신의 명령 사령권

87조a 군대의 수 장비 조직의 대장의 예산계상, 군대 출동의 원칙(문민통제)

87조b 연방 국방행정

96조a 국방군형사재판소

143조a 국내긴급사태에 대한 군대동원 등

1968년 6월24일 개정 제17회 개정, 긴급사태법 제정

12조a 국방과 그 밖의 서비스 의무

1항 남자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민간방위단에서 역무에 종사할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2항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역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7조a 병역 및 대역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53조a 방위사태에 관한 합동위원회.

87조a 긴박사태

12조a 전방위사태

115조a-I 방위사태에 대한 상세규정

1990년 10월 3일 헌법

2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 헌법체제형

(1) 1949년 코스타리카헌법

제12조 상설 군대는 금지한다. 경비 및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찰을 둔다. 국민방위군만을 둔다. 이 경우에도 군대는 문민에 복종한다. 군대는 개별적 집단적 시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공화국, 모나코, 바티칸, 파나마, 나울, 서사모아, 감비아, 등

(2) 1981년 파라오 공화국 비핵헌법

전쟁에 사용할 핵무기 화학병기 가스 또는 생물병기 등 유해물질, 원자력시설 및 폐기물, 국민투표 상 4/3의 찬성없이는 파라오영역에서의 사용 실험, 저장 혹은 폐기 할 수 없다.

1986년 신자유연합협정-미군기지 제공, 50년간 제정지원, 조건부핵무기반입

(3) 일본국 헌법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달성을 위해 육세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부인한다.

3.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 헌법조항화형 헌법

(1) 1931년 스페인헌법 6조-국가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한다

사법, 조정, 중재절차를 거쳐야만 선전포고할 수 있다(1977년 헌법)

(2) 1935년 필리핀헌법

국책수행의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수탁된 국제법의 제원칙을 국내법의 일부로서 채용하고 평화 평등 정의 자유 협조 및 모든 국민과의 친선정책을 존중한다.(1946년 개정헌법 제2조3항, 1973년 헌법, 1987년신헌법 제2조2항)

필리핀은 국가이익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의 핵무기로부터의 자유를 정책으로서 확립하고 추구한다(2조8항)

(3) 베마헌법

(4) 대한민국 헌법

4. 영세중립헌법화방식

(1) 오스트리아헌법

제1조 대외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의 영토불가침을 위해 자유의지로 영세중립을 선언한다. 오스트리아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영세중립을 유지하고 옹호한다. 오스트리아는 장래 이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영토 내에 어떠한 외국군사기지도 두지 않는다 (1955년 헌법)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외국 원조목적의 오스트리아 부대 파견에 관한 헌법규정 (1965년 제정)

(2) 스위스

정부견해-영세중립국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전쟁을 개시하지 않을 의무, 중립내지 독립을 옹호할 의무, 영세중립의 제2차적 의무(전쟁에 휩쓸리지 않는 외교정책 확립의무, 군사협정 불체결의무 등 군사정책, 관세동맹 경제동맹 불체결의무) (전시 중일방국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 군대제공 금지, 교전자 일방에 대한 주권이양 금지, 중립영역에 대한 불가침의무)

민병제에 의한 무장중립-성년남자의 생애군사훈련, 여성의 민간방위 협력의무, 양심적 병역거부는 1977년 국민투표로 부정

5. 비동맹군축형

(1) 1974년 유고헌법

유고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국제관계의 기초를 국가주권과 평등존중, 내정불간섭, 사회주의 국제주의 원칙 및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둔다. 유고는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조직 활동에 적극 참가한다. 유고는 무력의 행사와 위협을 부인하고 전면적이며 완전한 군축달성을 노력한다.

(2) 1973년 방글라데시헌법 제25조

민족자결에 의한 신흥독립국으로서 1954년 네루 주은래 공동선언(평화5원칙-영토와 주권 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호폐평등, 평화공존), 1955년 반동 10원칙(기본권 존중, 유엔존중 주권 영토보전 존중, 인종간의 평등, 내정불간섭, 유엔헌장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존중, 타국 억압금지, 침략전쟁 무력행사 부인, 평화적 해결, 상호이해 촉진, 국제의무 존중)

6. 사회주의혁명 + 침략전쟁부인형

1998년 북한헌법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DPRK)의 대외정책의 이본이며 대외활동의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59조 DPRK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7. 평화조항을 갖지 않는 헌법

영국과 미국은 헌법자체에 평화조항은 없다.

전쟁과 조약체결에 관한 민주적 통제, 대내-입헌민주주의, 대외-전쟁국가

8. 소결

제1차 세계 대전 전에도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전쟁위법화를 필두로 하는 평화주의 사상이 헌법이 명문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에는 켈로그 브리앙조약에서 보듯 전쟁위법화를 국제법의 일반 원리로 확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법원리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침략전쟁 부인의 법리가 헌법규범화하였다. 침략전쟁포기와 비무장형, 침략전쟁포기와 주권제약형, 침략전쟁포기와 전수방위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때 헌법규범화하였다는 것은 평화주의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원리로 격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권력 제약의 원리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한국헌법과 평화주의

1. 역대헌법에서의 군사 및 평화관련조항

(1) 1948년 헌법

전문 -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3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

제57조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사후보고 승인),

제59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행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한다.

제61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2조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계엄

(2) 1962년헌법(제5차개정)

전문 -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으로써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56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항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7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제75조 계엄선포권

제87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3) 1972년 헌법

전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32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보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43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제53조 긴급조치권

제54조 계엄선포권

제66조 국무회의 심의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제67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제95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4) 1980년 헌법

전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4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8조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제35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51조 비상조치권

제52조 계엄선포권

제96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2항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5) 1987년 헌법

전문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된다.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6조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권

제77조 계엄선포권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

제91조 국가안전보장회의

2.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와 규범적 내용

(1) 침략전쟁의 포기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 세계 대전 후, 국제사회는 전쟁의 위법화를 선언하고 이를 국제법화하였다. 우리가 잘아는 켈로그 브리앙조약이 그렇다. 그런데 이 때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의 규범화에 불과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어진 헌법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평화주의 그리고 침략전쟁 부인을 헌법규범화 한다.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에서도 전문에서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

여 제6조 1문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전쟁을 부인함을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1962년 헌법에서는 평화주의가 전문에서 조문으로 편입되어 그 규범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제평화주의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 1항에 규정하면서 동시에 침략전쟁의 부인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여 헌법위반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가 무기사찰 재개를 요지로 한 결의문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해체불이행에 따른 무력침공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은 현재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핵개발을 입증할 자료로 내세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충격적이기 까지 하다.

(2) 개별적 자위권과 국토방위 의무

헌법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문리 해석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제정자의 입법의도 등을 고려하는 목적론적 해석을 하게 된다.

문리해석에 따른다면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토'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5조의 뜻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한 방위 즉 자위권만을 인정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정과정에서의 속기록을 보더라도 1948년 헌법에 평화주의가 수사적 차원의 산물이 아니라 자각적으로 헌법규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평화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규범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다만 우리의 경우는 비무장평화주의까지는 가지 않고 군대를 규정하되 그 임무는 국토방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오랫동안 전쟁의 참화를 겪었지만, 그것이 식민화된 상태에서의 전쟁경험이었기 때문에 자위권까지 부정하기는 힘들었고 다만 자위의 범위를 국토방위로 한정축소함으로써 자위권의 변질과 남용을 경계하였다. 그것이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로 한정한 1948년 헌법 제6조 2문의 규범적 의미내용이며, 현행 헌법 제5조 2항 전문의 의미내용이다.

(3) 국군 법정주의와 의회 중심주의

자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군통수권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두가지 견제장치가 있다.

우선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군을 두더라도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여하에 따라서는 자위를 위한 국군이 아니라 침략군이 될 수 있으며, 우리 헌정사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군대한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규범인 법률의 형식을 취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국군이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전포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4) 집단적 자위권의 인정여부

최근 들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 국군이 '국토'를 벗어난 외국 이라크에서 과연 전쟁업무 종사가 과연 자위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논란이 된다.

이러한 이라크 파병을 실체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위권에는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침략을 당한 국가가 개별적으로 맞서는 방법과 다른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 맞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헌법의 자위권이 개별적 자위권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동맹과 같은 집단적 자위권까지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더 면밀한 헌법해석론적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1948년 헌법에 따르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군사조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제42조에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전보장조약에 관한 일체의 규정이 없다. 박정희군사정권이 쿠데타 후 만든 1962년 헌법 제56조 1항에서처럼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하면 1948년 헌법제정 당시에는 한미안보조약과도 같은 군사조약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거나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2년 헌법의 경우에도 그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1962년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을 뿐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개별적 자위권에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지게 된 바 있다.

1980년 헌법에는 국군의 임무를 국토방위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헌법에 등장하게 된다. 헌법제정권자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가에 국군을 해외에 파병하거나 군사조약을 맺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로 삼아볼 수 있는 조항이 등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침략전쟁을 부인한 제5조 1항과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안전

보장의 개념을 대단히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인정하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그 틀로부터도 벗어나고 있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조되어 대한민국의 국토방위 또는 공동방위를 위해서만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속기동군으로 위상이 강조되고 그 임무와 활동범위가 재조정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의구심과 상호방위조약의 헌법과의 정합성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3. 평화주의인가 평화적 생존권인가

신속기동군화 및 이를 위한 군사변환 등 이른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쟁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평화권 또는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각적 논의에 이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바, 이하에서는 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평화적 생존권을 구체화하여 보기로 한다.

(1) 평화주의의 인권적 기초는 평화적 생존권

가. 헌법의 기본원리-이념적 기초, 지도원리

전문과 본문 중에 명시되거나 헌법전에 추상적으로 반영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제시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

*국민주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평화(국가)주의

나. 평화주의의 인권적 기초

*인간의 평화적 생존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

*정책으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평화가 중요

*전쟁은 국가의 대외정책수단으로 견제하기 위해

(2)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가.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빈곤 기아 등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

나. 평화적 생존: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

협의: 전쟁과 군대 없이 평화적 생존 예) 징병거부권

광의: 전쟁, 군대+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 없이 사는 권리

예) 군사적 목적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거부

다. 헌법적 근거-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3)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

가. 비교헌법사와 평화적 생존권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저해 행위의 배제- 무기수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의 배제 - 징병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 금지 - 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나. 한국헌법과 평화적 생존권

평화적 생존권의 최소표현으로서의 헌법 제5조

침략전쟁의 부인

개별적 자위권의 인정과 군사력에 의한 자위권

*국토방위

*집단적 자위권의 부정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내내-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과 본질내용 침해금지

대외-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4) 법적 성격

가. 평화주의인가 평화적 생존권인가-권리로서의 실의

나. 자유권적 측면

다. 청구권적 성격

(5) 주체

- 가. 개인
- 나. 민족 ≠ 민족 자결권

(6) 효력

- 가. 대국가적 방어권 - 국토방위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을 갖고,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얼마만큼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
 - *선전포고 및 외국군대 주둔에 대한 동의권(제60조)
 - *군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국무회의 심의토록(제89조)
 -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권제한(제37조2항)
- 나. 대국제적 방어권 -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말 것

IV. 연행 헌법상 평화주의의 한계

1. 헌법 내재적 문제

(1) 영토조항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한헌법

1948년 103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1972년 149조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91년 동시유엔 가입

구 서독헌법 23조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한국 헌법판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기본권의 보장,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법권의 독립, 자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독일 헌법판례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의 보장,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리, 행정의 합법률성, 사법권의 독립, 복수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보장

-> 이에 따르면 경제체제를 달리하는 북한과는 대결 또는 제압의 상대일 뿐이다.

1972년 북한 헌법

제5조 DPRK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전국적 범위에서 외부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고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

제14조 DPRK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하고 자주적 군사노선을 관철 한다. DPRK의 무장력의 사명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승리를 응호하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획득물을 방위하고 조국의 자주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1998년 북한헌법

제9조 DPRK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3) 국방의 의무와 병역거부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독일헌법 12조a 국방과 그 밖의 서비스 의무

1항 남자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연방국경경비대 또는 민간방위단에서 역부에 종사할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

2항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역에 종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

전 문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제2조 2문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사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3. 법제도의 문제

(1) 국가보안법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병역법

제88조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 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징발법

(4) 계엄법

4. 법의식의 문제

(1) 안보이데올로기

1948년 헌법 제28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962년 헌법 제32조2항)

1972년 헌법 제32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2) 대결 의식

전쟁기념관 vs 평화기념관

V. 맺는 말

이상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주로 헌법규범에 대한 비교헌법사적 고찰 및 평화주의를 둘러싼 규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위법화라는 평화주의 흐름의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으되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침략전쟁포기 전수방어형 평화주의로 성문화 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는 규범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여 온 것이 솔직한 헌법현실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에 근거하여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소송과 법률개폐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평화주의 원리가 법령 해석과 국가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며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가치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헌법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는 평화주의 원리의 복권화 또는 현재화 과정의 출발선상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단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주의가 현실화되는 과정은 평화주의 조항을 둘러싼 국가의사와 지배적 담론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지배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사회 관계의 각축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주의 원리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계부분에서 일부 언급한 바 있듯이 평화주의 문제가 법적 규범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범자

체의 존부문제뿐만이 아니라 평화주의를 둘러싼 헌법제도와 헌법의식의 문제에 대한 이해, 평화주의를 둘러싼 사회관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분석과 헌법실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1 ●

다른 나라 헌법의 평화 관련 조항

아메리카합중국 헌법

제 1 조 (입법부)

제 8 절 (연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10항】 공해에서 범한 해적행위 및 중죄 그리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다.

【11항】 전쟁을 포고하고, 나포인허장을 수여하고, 지상 및 해상의 포획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2항】 육군을 모집, 편성하고 이를 유지한다. 다만, 이 목적을 위한 경비의 지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3항】 해군을 창설하고 이를 유지한다.

【14항】 육해군의 통수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5항】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민병의 소집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16항】 민병대의 편성, 무장 및 훈련에 관한 규칙과, 합중국의 군무에 복무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규칙을 정한다. 다만, 각주는 민병대의 장교를 임명하고, 연방의회가 정한 군율에 따라 민병대를 훈련시키는 권한을 각각 유보한다.

【17항】 특정주가 합중국에게 양도하고, 연방의회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합중국정부 소재지로 되는 지역(10평방 마일을 초과하지 못함)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독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요새, 무기고, 조병창, 조선소 및 기타 필요한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주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입한 모든 장소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제 9 절 (연방의회에 금지된 권한)

【1항】 연방의회는 기존 각주중 어느 주가 허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주 또는 입국을 1808년 이전에는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이러한 사람들의 입국

에 대하여 1인당 1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입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2항] 인신보호영장에 관한 특권은, 반란 또는 침략의 경우에 공공의 안전상 요구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지시킬 수 없다.

제10절 (주에 금지된 권리)

[3항] 어느 주라도 연방의회의 동의 없이는 톤세를 부과하고, 평화시에 군대나 군함을 보유하고, 다른 주나 외국과 협정이나 맹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실제로 침공당하고 있거나,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는 교전 할 수 없다.

제 3 조 (사법부)

제 3 절

[1항] 합중국에 대한 반역죄는 합중국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에게 가담하여 원조 및 지원을 할 경우에만 성립한다. 누구라도 명백한 상기 행동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이 있거나, 또는 공개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이외에는 반역죄의 유죄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2항] 연방의회는 반역죄의 형벌을 선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반역죄의 선고로 사권이 박탈된 자는 자기의 생존기간을 제외하고 혈통오독이나 재산 몰수를 초래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 2 조(무기휴대의 권리)

규율 있는 민병들은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수정 제 3 조(군인의 숨營)

평화시에 군대는 어떠한 주택에도 그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사영할 수 없다. 전시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영할 수 없다.

수정 제 5 조(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

는 파렴치죄에 관하여 심리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시에 복무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의 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독일 기본법

전 문

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제 1 조 【인간존엄의 보호】

- ①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 ② 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 ③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

제 2 조 【일반적 인격권】

- ①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해손당하지 않을 권리 to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

제 4 조 【신앙, 양심과 고백의 자유, 병역거부】

- ③ 누구도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 8 조 【집회의 자유】

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인가없이 평화로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

제 9 조 【결사의 자유】

②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제10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

①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서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② 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나 연방 또는 어떤 주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할 수 있다.

제12a조 【병역의무】

① 만 18세 이상의 남자에게는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②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동 법률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군대나 연방국경수비대와 무관한 대체복무의 경우도 규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복무를 위해 징집되지 아니한 병력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목적을 위하여 노동관계를 갖도록 민간적 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의한 근로관계는 군대·군보급분야 및 공행정에서 설정될 수 있다. 민간인의 급양분야에서 근로관계를 갖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 방위사태 민간의 보건시설과 의료시설 및 상주 약전병원에서의 민간역무수요가 지원으로 충족 될 수 없는 때에만 만 18세 이상 55세까지의 여자를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징집할 수 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집총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⑤ 방위사태 발생 이전에는 제3항의 의무를 제80a조 제1항에 따라서만 부과 될 수 있

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제3항에 따른 역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행사에 참가할 의무가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방위사태시 제3항 2문에 규정된 분야에서 노동력의 수요가 지원으로 충족될 수 없는 때에는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직업행사나 직장을 포기할 수 있는 독일인이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방위사태 발생이전에는 제5항 1문이 준용된다.

제16a조 【망명권의 제한】

① 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② 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로부터는 입국하는 자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기타의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제1문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와 이에 대하여 중립적 법적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써 국가의 법적상태, 법적용 및 일반적 정치상황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도 행해지지 않고 잔혹하거나 모욕적인 처벌 혹은 처우도 행해지지 않는 국가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에 속한 외국인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경우 및 명백히 증거가 없거나 또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의 경우에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수행은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정지된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지체하여 제출된 신청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로써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공동체구성상호간의 국제법상의 조약 및 체약국에 있어서 그 적용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에 의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망명결정의 상호승인을 포함한 망명청원의 심사에 관한 규제를 행하는 제3국과의 국제법상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7a조 【군인의 기본권제한】

① 병역과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에 대하여 병역 또는 대

체복무 기간 중에는 말, 글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고 전파할 기본권(제5조 제1항 1문 전단),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제8조)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청원과 소원을 할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청원권(제17조)을 제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20a조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

국가는 장래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거하거나 법률과 규범에 따른 행정과 판결을 통하여 자연적 생활기반을 보호한다.

제24조 【집단안전보장체제】

- ①연방은 법률에 의해서 국제기구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 ②각 州가 국가적 권능의 행사 및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권한을 가진 한도에서 각 州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인접한 제국가기관에 고권을 이양할 수 있다.
- ②연방은 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그 주권을 제한하거나 유럽 및 세계각국가간의 평화적·항구적 질서를 달성하고 보장하는데 동의한다.
- ③국제분야의 해결을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포괄적·의무적인 국제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할 것이다.

제25조 【연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의 국제법】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제26조 【침략전쟁의 금지】

- ①국가간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시키기에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과 특히 침략전쟁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
- ②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운송 그리고 거래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35조 【법적 구조와 직무상의 지원】

- ②공공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한 州는 특별히 중대한 경우 경찰이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의 지원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한 어려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경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재해 또는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그 구호를 위하여 州는 다른 州의 경찰력 다른 행정청과 연방

국경수비대 및 군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 ③자연재해나 사고가 한 州 이상의 영역을 위협할 때에 효과적인 극복에 필요한 한에서 연방정부는 州정부에게 다른 州의 경찰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또한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국경수비대와 군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그리고 그밖에도 위협이 제거된 후에는 지체없이 폐지되어야 한다.

제36조 【연방관청의 공무원】

- ②병역법도 연방이 각 州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는 것과 각 州의 특별한 향토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제45a조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 ①연방의회는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국방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갖는다. 그 구성원 4분의 1의 제의가 있으면 국방위원회는 일정한 사항을 조사대상으로 할 의무를 진다.
- ③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b조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회】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연방의회의 통제권 행사시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전권위원회가 임명된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60조 【연방공무원과 군인의 임명】

- ①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하사관을 임면한다.

제65a조 【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

국방장관은 군대에 대한 명령권과 지휘권을 갖는다.

제79조 【기본법의 개정】

- ①기본법은 기본법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변경 또는 보충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강화조약, 강화조약의 준비 또는 점령법적 법질서의 폐지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도움이 될 국제법적 조약인 경우에는 기본법의 조항들이

그러한 조약의 체결과 발효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해명에 국한되는 기본법의 문구의 보충으로써 족하다.

②이러한 법률은 연방의회의원의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의원의 표수의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③연방을 각 주로 편성하는 입법에 있어서 주의 원칙적인 협력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원칙들에 저촉되는 기본법개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80a조 【긴장사태】

①기본법 또는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한 방위에 관한 연방법률이 본조에 따라서만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그 적용은 방위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의회가 긴장사태의 발생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적용에 특별히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긴장사태의 확인과 제12a조 제5항 1문 및 제6항 2문의 경우의 특별동의는 투표된 표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법조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폐지되어야 한다.

③이러한 법조항의 적용은 제1항에 상관없이 국제기구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맹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는 의결에 따라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서도 허용된다. 본 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의회가 재적과반수로 요구하는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

제87a조 【군대】

①연방은 방위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②방위를 위한 경우외에는 기본법이 명문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③군대는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 그 방위임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한 민간인과 그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정리의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방위사태와 긴장사태의 경우에는 경찰상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서도 민간재산의 보호를 군대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직할관청과 협력한다.

④연방과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는 제91조 제2항의 요건이 존재하고 경찰력과 연방국경수비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민간인·민간재산을 보호하고 조직되고 군사적으로 무장된 폭도들과 투쟁하는 경찰과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군대의 투입은 연방의회나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어야 한다.

제87b조 【연방국방행정】

①연방국방행정은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국방행정은 군대의 인사와 그 물적수요의 직접적인 충당의 과제에 기여한다. 상이군인의 원호와 건축의 사무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에 의해서만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또한 법률이 연방국방행정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한을 위임하는 때에는 이 법률도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인사영역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②그밖의 징병사무와 민간인보호를 포함한 국방에 관한 연방법률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자신의 하급행정조직을 갖춘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되거나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이 연방의 위임에 따라 주에 의해 수행될 때에는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85조를 연방정부와 직할연방최고관청이 갖는 권한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상급관청에 이관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때 이들 관청은 제85조 제2항 1문에 의한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제91조 【연방의 존립에 대한 위험의 방지】

①연방 또는 주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과 다른 행정청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힘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험에 처한 주가 스스로 그 위험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연방정부가 그 주의 경찰과 다른 주의 경찰력을 자신의 지시하에 둘 수 있고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들을 투입할 수 있다. 명령은 위험이 제거된 후 연방참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위험이 한 주이상의 영역에 미칠 때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정부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1문과 2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96조 【연방법원】

②연방은 연방법원으로 군대를 위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와 외국에 파견되거나 군함에 승선한 군대의 소속원에 대하여만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들은 연방법무장관의 소관분야에 속한다. 그 전임법관은 법관직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법원이다.

일본국 헌법

전문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통해 행동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서, 모든 국민과의 화합에 의한 성과와,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고, 정부의 행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확정한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원리이고,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다. 우리들은, 이것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게 자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고, 우리들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들은,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을 면하고,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들은,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 이익에만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이 법칙에 따라서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 관계에서는 것이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에 걸고,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9조

-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회구하고,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하게 이를 포기한다.
-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 해, 공군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21조

- ② 검열을 해서는 안 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생명 내지는 자유를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기타의 형벌을 부과받지 않는다.

스위스 연방헌법

전문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스위스국민과 주(Kanton)는,
창조주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세계에 대한 연대와 개방적 정신으로 자유, 민주주의, 독립 및 평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맹을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고,
타자의 존중과 공정속에서 다양하게 생활할 것을 결의하고,
장래세대에 대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자각하며,
자기의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이며, 국민의 강력함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되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하의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스위스연방)

스위스국민과 Zurich, Bern, Luzern, Uri, Schwyz, Obwalden und Nidwalden, Glarus, Zug, Freiburg, Solothurn, Basel-Stadt und Basel-Landschaft, Schaffhausen, Appenzell Ausserrhoden und Appenzell Innerrhoden, St. Gallen, Graubunden, Aargau, Thurgau, Tessin, Waadt, Wallis, Neuenburg, Genf und Jura의 각 주는 스위스연방을 구성한다.

제10조(생명 및 인격적 자유의 권리)

- ①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한다.

제13조(프라이버시의 보호)

① 누구든지 그 사생활 및 가족생활, 주거와 신서,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퇴거, 인도 및 송환으로부터의 보호)

① 스위스인은 스위스로부터 퇴거되지 아니한다. 또한 외국의 기관에 인도되는 것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난민은 박해를 받는 국가에 강제적으로 송환되거나 인도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고문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에 강제적으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제40조(외국체류스위스인)

② 연방은 외국체류 스위스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특히 연방사무에 관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 병역 또는 대체복무, 궁핍자에의 지원 및 사회보험에 관하여 규칙을 정한다.

제54조(대외관계)

① 대외관계는 연방의 관할사항이다.

② 연방은 스위스의 독립의 유지를 위하여 또한 인권의 존중, 민주주의의 촉진, 국민의 평화적 공존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기여한다.

③ 연방은 주의 권한을 감안하고,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55조(외교정책결정에의 주의 참가)

① 주는 자기의 권한 또는 본질적 이익에 관련하는 외교정책의 결정의 준비에 참가한다.

② 연방은 주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와 협의한다.

③ 주의 견해는 당해 주의 권한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특히 중시된다. 이 경우 주는 국제교섭에 적절히 참가한다.

제56조(주와 외국과의 관계)

① 주는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약은 연방의 권리 및 이익과 다른 주의 권리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는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주는 외국의 하급기관과 직접교섭할 수 있다. 기타 경우에는 주와 외국과의 관계는 연방이 주를 위하여 처리를 행한다.

제57조(안전보장)

① 연방 및 주는 각각의 권한범위내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민의 보호를 확보한다.

② 연방 및 주는 국내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각각의 노력을 공동으로 행한다.

제58조(군대)

① 스위스는 하나의 군대를 가진다. 군대는 원칙적으로 민병(Milizprinzip)으로 구성한다.

② 군은 전쟁의 방지와 평화의 유지에 공헌한다. 또한 군은 국가와 그 주민을 방어한다. 군은 국내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기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비군사부문의 기관을 지원한다. 기타의 임무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군의 지휘는 연방의 관할사항이다. 주는 비군사부문의 기관에 의한 수단으로 주내의 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기의 영역에 있어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제59조(병역 및 대체복무)

① 모든 스위스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대체복무(zivilen Ersatzdienst)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스위스여성에 관하여는 병역은 자유의사에 맡긴다.

③ 병역, 대체복무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스위스남성은 공과금(Abgabe)을 부담한다. 이 공과금은 연방이 부과하고 주가 이를 산정하고 징수한다.

④ 연방은 소득에 미치는 손실에의 적절한 보상에 관하여 규칙을 정한다.

⑤ 병역 또는 대체복무를 하고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상실한 자는 당해 자 또는 친족에 대한 연방의 적절한 부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0조(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

① 군사입법과 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는 연방의 관할사항이다.

② 주는 연방법의 범위내에서 주의 군대를 가지며 그 장교를 임명하고 승진시키고 피

복과 장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연방은 적절한 보상하에 주의 군사조직을 연방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민방위)

①민방위는 연방의 관할사항이다. 민방위는 무력분쟁의 영향으로부터 사람 및 재산을 방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연방은 대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민방위의 출동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③연방은 민방위에 복무하는 남성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여성에 관하여는 자유의사에 맡긴다.

④연방은 소득에 미치는 손실에의 적절한 보상에 관하여 규칙을 정한다.

⑤민방위에 복무하여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상실한 자는 당해 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하여 연방의 적절한 부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7조(무기 및 군수자재)

①연방은 무기, 무기의 부속부품 및 탄약류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한다.

②연방은 군수자재의 제조, 조달 및 판매와 수입, 수출 및 통과수송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제121조

①외국인의 출입국, 체재 및 정주와 난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관할사항이다.

②스위스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외국인은 이를 국외추방할 수 있다.

제140조(의무적 국민투표)

①다음 사항은 국민과 주의 투표에 회부한다.

b. 집단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제141조(임의적 국민투표)

①다음 사항은 5만인의 유권자 또는 8개 주의 요구에 의하여 초안이 공고된 날부터 10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2003.6.19 개정, 2003.8.1 시행>

d. 다음 내용을 가진 국제조약

2. 국제기구에의 가맹을 정하고 있는 것

제173조(기타 임무와 권한)

①연방의회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 a. 연방의회는 스위스의 대외적 안전, 독립 및 중립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b. 연방의회는 국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 c. 비정상적인 사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본항제a·b각호에 의거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명령 또는 단순연방결의를 제정할 수 있다.
- d. 연방의회는 군사행동을 명한다. 또한 그를 위하여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원한다.

제185조(대외·대내안전보장)

①연방내각은 스위스의 대외적 안전, 독립 및 중립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연방내각은 대내적 안전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연방내각은 공공의 질서 또는 대내적 또는 대외적 안전에 대한 현실의, 급박한 침범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접 이 조를 근거로 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명령에는 기한을 붙인다.

④긴급사태에 있어서는 연방내각은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연방내각이 4000명의 넘는 군병력을 동원하고 또는 이 출동이 3주간을 넘어 계속되는 때에는 연방의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 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 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전문

우리 유럽 각국의 국민들은 더욱 긴밀한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공통의 가치를 토대

로 평화로운 미래를 공유하기로 결의한다. 우리는 정신적,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인 유산에 유념하면서 인간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라는 불가분적·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유럽연합을 설립한다.

유럽연합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들에 토대를 둔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시민권 및 자유롭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영역을 창설함으로써 인간을 그 활동의 중심으로 삼는다. 유럽연합은 유럽 각국의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 각 회원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국가·광역·지역 차원의 국가권력조직을 존중하여 전술한 공동가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개인, 재화,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 사회적 진보,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현장을 통해 기본권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기본권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헌장은 공동체와 유럽연합의 권한 및 과제,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고, 특히 각 회원국의 공통된 헌법적 전통과 국제적 의무, 유럽연합조약, 공동체조약, 인권 및 기본권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공동체와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사회헌장, 유럽공동체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의 판례로부터 나오는 권리들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타인, 나아가 인류공동체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자유 및 원칙을 승인한다.

제2조 생명권

- ①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갖는다.
- ② 어느 누구도 사형언도를 받거나 사형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7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존중

모든 사람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 주거 및 의사소통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갖는다.

제10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①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종교나 세계관을 바꿀 자유와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예배, 교육, 전승과 의식을 통해 고백할 자유를 포함한다.
- ②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인정된다.
- ③ 회원국의 영역에서의 노동을 허가받은 제3국 국민은 유럽연합 소속 시민의 노동조건에 상당하는 노동조건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8조 망명권

망명권은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51년 7월 28일의 제네바 협약과 1967년 1월 31일의 의정서의 규준 및 유럽공동체 조약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제19조 강제퇴거, 추방 또는 인도에 대한 보호

- ① 집단추방은 금지된다.
- ② 어느 누구도 자신이 사형, 고문 또는 다른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퇴거, 추방 또는 인도될 수 없다.

제22조 문화, 종교 및 언어의 다양성

유럽연합은 문화, 종교 및 언어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3조 보호 수준

본 헌장의 어떤 규정도 유럽연합법, 국제법,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을 비롯한 유럽연합, 유럽공동체 또는 각 회원국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국제협정, 회원국의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많이 제약하거나 그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부 록 2 ●

<헌법 다시보기> 무엇을, 왜 하나요?

■ 왜 헌법을 다시 보나요?

지난 해 대통령 탄핵이나 행정수도 위헌판결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미처 몰랐던 헌법의 중요성에 주목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지문날인제도 같이 시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헌법재판관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에 물어보는 사회'로의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헌법을 다시보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 다시보기>의 문제의식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헌법 다시보기>가 주목하는 더 근본적인 측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화와 정보화라는 거대한 변화가 그것입니다. 또한 성과 생태, 평화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社会의 가치 변화가 그것입니다.

1987년 이후 한국사회는 '구조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국민'의 일상생활·정서·의식 구조·사고방식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오는 2020년에는 자녀 없이 부부만 살거나 혼자 사는 기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특히 1인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의 점유율은 4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은 고령사회 진입, 기존의 남성가부장 중심의 가족 해체, 이혼율 증가 양상 등이 두드러지면서 부부와 자녀가 동거하는 '정상'가정이 급속히 줄어들 것임을 뜻한다. '가정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삼는' 다시 말하면, 가정 내 여성노동을 성역할 이라는 이름으로 적극하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이라는 의미다.

2005년 현재 한국社会의 각종 지표를 살펴보자. 여성 가구주는 전체 가구주의 19.5%인 370만 6천명으로 20년 전 보다 3.6배 증가했고, 1인가구가 15.5%, 부부가구

14.8%, 어머니나 아버지 한 명과 자녀로 이루어진 '한(single)부모' 가구가 9.4%이다. 결혼하는 사람 100명 가운데 8명은 국제결혼이다.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 중 이혼율 3위이다. 지난 34년간 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는 7배 증가했지만, 혼인 건수는 30% 이상 줄었다. 작년에 이혼한 부부 중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 이혼 비중은 18.3%로, 23년 사이에 4배 증가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5~1.17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당대 최저이자, 근대 국민국가 역사상 최저이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 2100년 한국의 인구는 1,621만명으로 감소된다. 한국은 2004년말 현재 42만명의 외국인이 취업하고 있는 유엔이 정한 이민국가다(유엔은 이주노동자를 이민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는 '공식'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을 훨씬 넘는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산업구조, 지구화, 여성의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모든 변화들을 주도하는 것은 여성이다. 이제 여성들은 더이상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 '집안' 일과 '바깥' 일, 육아의 삼중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현모양처 겸 커리어우먼'이 되라는 이중 메시지 사이에서 분열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 전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인도인데, 대신 인도는 기혼여성의 자살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한국 여성들은 자살하느니 이혼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 정희진, <헌법의 탈식민화와 '현실화'를 위하여 - 한국헌법의 남성성과 국가주의의 문제>, 창비-시민행동 공동 심포지엄 [87년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 자료집 중

헌법은 곧 국가입니다. <헌법 다시보기>가 주목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 주권 등 모든 영역에서 도전에 직면한 국가, 그리고 보장받아야 하고 확대되어져야 할 새로운 정체성들과 새로운 가치들입니다. 그 정체성들과 가치들 사이의 새로운 합의 혹은 공동의 꿈, 그리고 그 합의와 꿈에 기반해 거듭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찾아나서는 길 찾기입니다.

③ <헌법 다시보기>의 지향과 목표

▣ 헌법, 누구의 목소리인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다시보기>는 그 '모든 국민'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살펴봅니다.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다양한 성소수자들, 장애인과 지역민들 또한 '모든 국민'에 실제로 포함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또 <헌법 다시보기>는 '모든 국민'만으로 충분한지도 되짚어봅니다. 조선족들, 이주 노동자들, 난민들 같은 다양한 이방인들,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들과 뭇생명들의 목소리를 헌법은 어떻게 담고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 헌법, 절대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절대적인 것, 최상의 법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 다시보기>는 바로 그 절대성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헌법은 <세계 인권선언>이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보다 우선해도 좋을까요? 헌법에 규정된 수많은 '보편적' 권리들은 정말 '보편적'일까요?

다른 한 편에서는, 헌법을 통한 문제해결 과정은 엘리트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통 사람들의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과정인 정치적 영역을 더 중시해야 하며 헌법은 간명하게 최소한의 기준만을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을 두려워하고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문제삼지 않는 정치는 결국 헌법 / 국가 테두리 내에서의 정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다시보기>는 헌법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이지 못한 지금의 헌법을 고쳐 절대적일 수 있는 헌법을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 다시보기>는 오히려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을 일상 정치의 영역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헌법을 끊임없이 재검토하고 재해석하고 재규정하면서, 과도하게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헌법에게 제 자리를 찾아주려는 것입니다.

▣ 새로운 합의 혹은 공동의 꿈

<헌법 다시보기>가 헌법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과 생태, 평화와 문화 등 시민사회의 다양한 정체성들과 가치들 사이의 새로운 합의 혹은 공동의 꿈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새로운 합의는 지구화

와 정보화라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확장된 시민권, 더 민주적인 정치, 경제질서 등이 모두 <헌법 다시보기>의 고민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초월적 헌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합의는 제 뜻을 알고 있는 합의, 소통가능한, 즉 계속적으로 재검토와 재해석, 재규정이 가능한 열린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1~2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새로운 가치들을 '선언'적으로 끼워 맞추는 것은 결국 헌법을 다시 박제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정말 제대로 된 헌법에 들어 갈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아젠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보자는 것이고 그럴 때만 실제 의미있는 개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정치적' 과정이 될 것입니다.

■ 헌법과 현실 사이

그래서 <헌법 다시보기>는 헌법을 고치는 것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합의들을 만들어가고 그 합의들이 현실 속에 반영되게 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게다가 우리 헌법에는 더욱 발전시켜가야 할 많은 조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의 내용들이 현실과 헌법 해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와 실천을 해나갈 것입니다.

● 부 록 3 ●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의 주요 계획

▣ 공개 토론회

이미 지난 7월 15일(금) 창비와 공동으로 진행한 심포지엄 <87년 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 헌법과 사회구조의 비판적 성찰>에서 발표한 세 편의 글을 통해 <헌법 다시보기>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를 일부나마 드러내보았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다양한 영역별, 관점별로 헌법을 다시 보는 공개 토론회가 연속적으로 개최됩니다. 7월 27일 제1회 <문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8월 말에는 제2회 <평화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와 제3회 <여성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에 이어, 진행됩니다. 이후 9월 중 제4회 <생명·환경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와 제5회 <자치·분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가 열립니다.

제4회 “생명·환경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제5회 “자치·분권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 일시 : 2005년 9월 2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일시 / 장소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http://www.action.or.kr/constitution>에서 확인하세요.

▣ 웹사이트 <헌법 다시보기>

<헌법 다시보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헌법 다시보기>의 활동 소식과 자료들을 신속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비단 <헌법 다시보기> 활동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헌법 관련 논의들을 소개하고 각종 논문 및 자료,

연속기획 헌법 다시보기

뉴스들을 모을 것입니다. 또 <주목! 이 판례>나 <생활 속의 헌법>, <해외 헌법 풍경> 등의 코너를 통해 작은 헌법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 웹사이트 주소 : <http://www.action.or.kr/constitution>

■ 헌법 다시보기 주요 소식

헌법 다시보기 활동 소식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논의에 관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 주목! 이 판례

어쩌면 추상적인 헌법 조문보다 더 강력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해석일 것입니다. 주목 할 만한, 혹은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헌법 판례들을 살펴봅니다.

■ 생활 속의 헌법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헌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네티즌들이 재판관이 되는 모의 헌법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해외 헌법 풍경

해외의 주요 헌법들을 살펴보고 특징이나 변화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논문/칼럼 모음

■ 뉴스 클립핑

■ 해외 헌법 DB

■ 헌법 정보 링크

③ 책 발간

심포지엄과 공개토론회의 성과들을 모아 단행본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 헌법 개혁의 의제를 제안하는 책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눈으로 헌법다시보기 토론회 토론문

인권, 평화, 안보와 여성

권김현영(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언니네트워크 운영위원)

헌법의 평화조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두 발제자의 발제문을 감사히 읽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심과 인권을 헌법재판소에 묻는 사례들이 빈번해지면서 더욱 헌법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헌법 자체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헌법을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평화주의 조항의 유형과 동향을 비교하고, 역대 한국 헌법에서의 평화조항의 변천을 짚어주신 이경주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이 가진 평화주의가 헌법 내 외부적 상황에 의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앞으로 평화를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 험하고 깊다는 점이 환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대훈 선생님의 발제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은 이경주 선생님이 제시한 현행 헌법에서의 한계를 인권의 측면에서 변화시키려한 비정구기구들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들을 보여주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토론을 위해 저는 이대훈 선생님의 발제문 일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대훈 선생님은 발제문(4쪽)에서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를 대외적 평화, 즉 전쟁과 대외 군사활동 등으로 국한해서 이해하는 것은 협소하다. 평화주의의 핵심은 폭력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인데, 폭력과 공포가 주로 외부로부터 기인한다는 인식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간 군사 분쟁을 기준으로 전쟁과 평화를 이분화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표명합니다.

저 역시 이 같은 문제의식에 깊이 동감합니다. 【다만 발제자가 지적한 "이러한 인식은 한국 현대사에 반복되었듯이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광범위한 폭력과 같이 시민들간의 분쟁을 은폐하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에 반대합니다.

【

일례로, 발제문에 제시된 반인도적인 범죄의 사례들 -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구금 혹은 심각한 신체 자유 박탈, 고문, 강간, 성노예화, 특정 그룹에 대한 박해- 은 군인의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인 범죄 일뿐만 아니라, 평화 시에 민간인에 의해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목록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평화란 국가간 평화, 혹은 국가로부터의 평화뿐만 아니라 일상적 영역에서도 다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발제자는 발제문 6쪽에서 8쪽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안보개념을 비판하며 그동안 안보라는 개념을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해왔으며 냉전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가 더 이상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안보라는 말이 경제안보, 환경안보, 인간안보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며 안보라는 말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안보라는 공포의 언어가 “인플레화”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간안보가 “낮은 수준의 위협을 강조하는 확대된 안보담론”을 이끌어내어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이슈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빈곤, 환경, 성차별 등의 이슈는 결코 “낮은 수준의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그동안 의도적으로 은폐되어왔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안보의 인플레화가 아니라 안보개념의 군사적 독점이었으며, 안보개념을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혼란이 아니라 평화적 생존이 가능해지기 위해 시민들이 어떤 위협에 평화적 생존을 지속하기 어려워하는지를 볼 수 있는 조건이자 선언으로 유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대훈.

“전쟁의 ^{기상운}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이다.”

1. 첫번째 저작 타당하다.

=> 여성과 아동은 힘없는 존재로 묻고간다.

2.

여성과 아동은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는 저작의 전제의 전제이 없다.

안보는 여성과 아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안보 ~~에서~~ 출판에서는 여성과 아동은
 ↳ 소외되어왔다.



(전문적인 이야기가 오간다.

↳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

→ 쉽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